

2024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Retirement Pension Plan



2024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생각 유안타증권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돋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우편물을 E-mail로 받아보세요

우편통보지를 E-mail로 변경하는 방법

1. 온라인에서 변경

• 개인형IRP

홈페이지(www.myasset.com) (뱅킹/계좌/대출)개인정보조회/변경 및 통보지관리)에서 E-mail로 변경

• DC플랜 가입자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E-mail 주소 등록 후 퇴직연금 홈페이지(My퇴직연금)기본정보>가입자정보조회/변경)에서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2. 유선변경 [고객센터(☎1588-2600) 및 영업점]

가입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E-mail주소 등록 및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가능

Contents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04
유안타증권 수수료가 변경되었어요	05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09
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2
03. 자연이자	13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4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15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17
07. 수급권의 보호	17
08. 계약이전 절차	18
09. 과세체계	19
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재정검증	23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27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27
03. 노후보장 체계	28
04. 노후자금 상세설계	28
05. 투자의 기본원칙	29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31
07. NPS 노후준비서비스	33

3.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01. 디폴트 옵션 선정	36
02. 디폴트 옵션(상품)지정 프로세스	37
03. 디폴트 옵션 적용	37
04. 디폴트 옵션(상품)적용 프로세스 상세	38
05. 디폴트 옵션(상품)현황	39

4. 폐업·도산기업의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4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동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이수 방법



유안타증권 수수료가 변경되었어요

* 개인형IRP 수수료는 2021년5월17일부터 조건없이 면제 적용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율 및 장기 계약 할인율은 2024년4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하 적용되며, 이전 기간에는 변경 전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DB

구분	적립금 평잔 구간	변경후	변경전
운용관리 수수료	5억 이하	0.23	0.30
	5억 초과~30억 이하	0.21	0.28
	30억 초과~100억 이하	0.19	0.25
	100억 초과~500억 이하	0.15	0.20
	500억 초과~1,000억 이하	0.11	0.15
	1,000억 초과	0.08	0.10
자산관리 수수료	30억 이하	0.19	0.25
	30억 초과~500억 이하	0.15	0.20
	500억 초과~1,000억 이하	0.11	0.15
	1,000억 초과	0.08	0.10

2. DC

구분	적립금 평잔 구간	변경후	변경전
운용관리 수수료	5억 이하	0.26	0.35
	5억 초과~30억 이하	0.23	0.30
	30억 초과~100억 이하	0.19	0.25
	100억 초과~500억 이하	0.15	0.20
	500억 초과~1,000억 이하	0.11	0.15
	1,000억 초과	0.08	0.10
자산관리 수수료	30억 이하	0.19	0.25
	30억 초과~500억 이하	0.15	0.20
	500억 초과~1,000억 이하	0.11	0.15
	1,000억 초과	0.08	0.10

3. 기업형IRP

구분	적립금 평잔 구간	변경후	변경전
운용관리 수수료	1억 이하	0.20	0.20
	1억 초과	0.18	0.18
자산관리 수수료	1억 이하	0.15	0.15
	1억 초과	0.13	0.13

4. 장기 계약 할인률

가) 변경후

구간	변경후
2차년도 ~ 4차년도	10%
5차년도 ~ 9차년도	12%
10차년도 이후	15%

나) 변경전

구간	변경후
만 3년 이상~ 만 5년 미만	5%
만 5년 이후	10%

퇴직급여보장법령 및 고시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1.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우대 할인

- 일반기업 퇴직연금 수수료율에 대하여 10% 또는 50% 할인
 - 2024년1월말 기준 퇴직연금 계약이 유지되고,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이 당사 자체 확인된 경우 시행일(2024.4.1)부터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할인 적용됩니다. 2024년1월말 이후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자격 취득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구간	중소기업 (10% 할인)		사회적기업 (50% 할인)	
		DB	DC	DB	DC
운용관리 수수료	5억 이하	0.21	0.23	0.12	0.13
	5억 초과~30억 이하	0.19	0.21	0.11	0.12
	30억 초과~100억 이하	0.17	0.17	0.10	0.10
	100억 초과~500억 이하	0.14	0.14	0.08	0.08
	500억 초과~1,000억 이하	0.10	0.10	0.06	0.06
	1,000억 초과	0.07	0.07	0.04	0.04
자산관리 수수료	30억 이하	0.17	0.17	0.10	0.10
	30억 초과~500억 이하	0.14	0.14	0.08	0.08
	500억 초과~1,000억 이하	0.10	0.10	0.06	0.06
	1,000억 초과	0.07	0.07	0.04	0.04

구분	구간	중소기업 (10% 할인)		사회적기업 (50% 할인)	
		기업형IRP	기업형IRP	기업형IRP	기업형IRP
운용관리 수수료	1억 이하	0.18		0.10	
	1억 초과	0.16		0.09	
자산관리 수수료	1억 이하	0.14		0.08	
	1억 초과	0.12		0.07	

2. 상품유형에 따라 발생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 부과기준 적용

- (1) 원리금보장형상품 : 예금, RP, 증권금융예수금, ELB/DLB 등
- (2) 계산방식 : 원리금보장형상품 평잔에 대해 연 0.01%p 할인금액 산정
- (3) 운용관리수수료에서 할인금액 차감 후 최종 운용관리수수료 부과

1. 퇴직연금 제도 일반사항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급여 제도의 구성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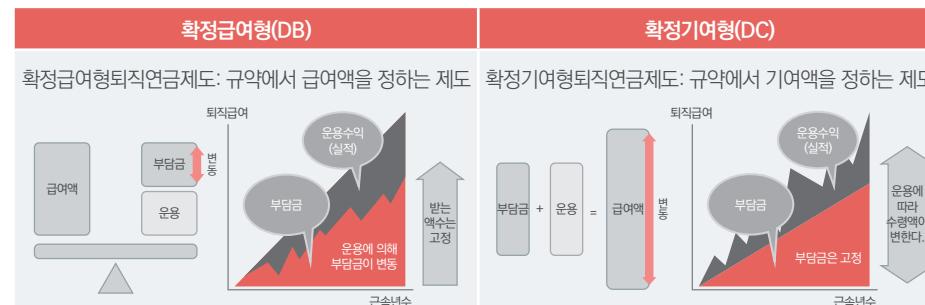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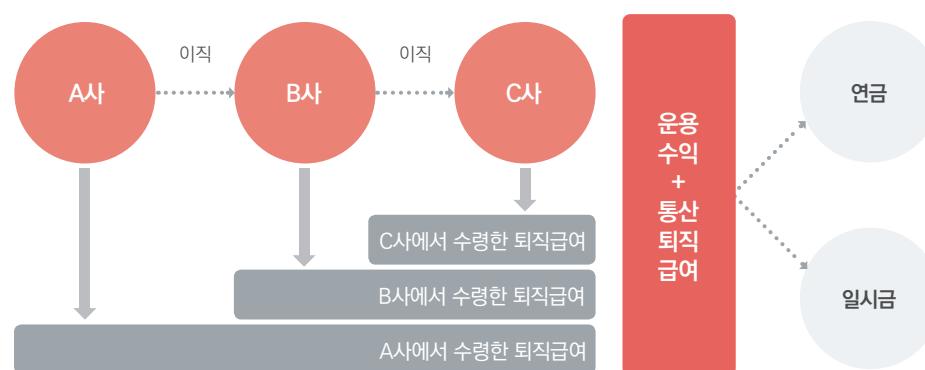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제도별 특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별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시 가입자는 부담금 및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손익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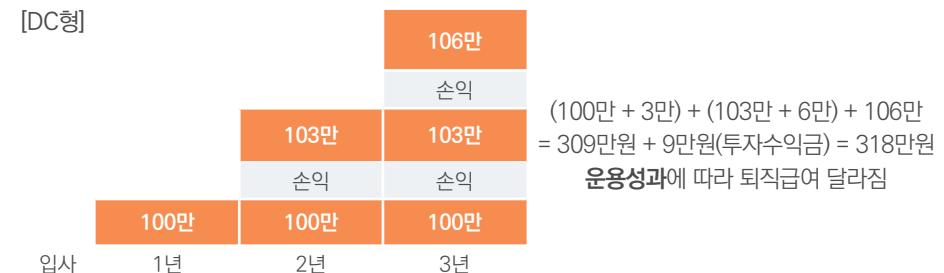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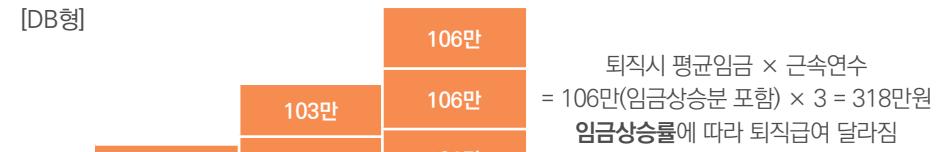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 개인형: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연봉 1,200만원(월100만원)에 입사 후 3년간 근무 후 퇴직 시
(매년 임금상승률 3%, 수익률 3% 가정)



제도별 비교

구분	DB	DC	IRP	
			기업형	개인형
사용자부담금	퇴직금주계약 이상 (계리사산출 안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사용자부담금 ± 운용손익	-	-
적립금 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사용자(기업)	가입자(근로자)	-	-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 사유 限)	-	-
가입자부담금	불가	가능(연금계좌 합산하여 연1800만원限)	-	-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연금 일시금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

|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의 100%
담보제공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50%

※ 당사: 현재 담보제공 가능 상품 없음

중도인출·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법정사유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限)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④ 신청일로부터 예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받은 경우
-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사유는 중도인출 불가, 담보대출만 가능한 사유)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

|03 지연이자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외)

지연이자율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 연 20%
-------	--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text{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 \text{주2)}}$$

* 주1) 임금총액: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 주2) 총 일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 참고: 일정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12개월로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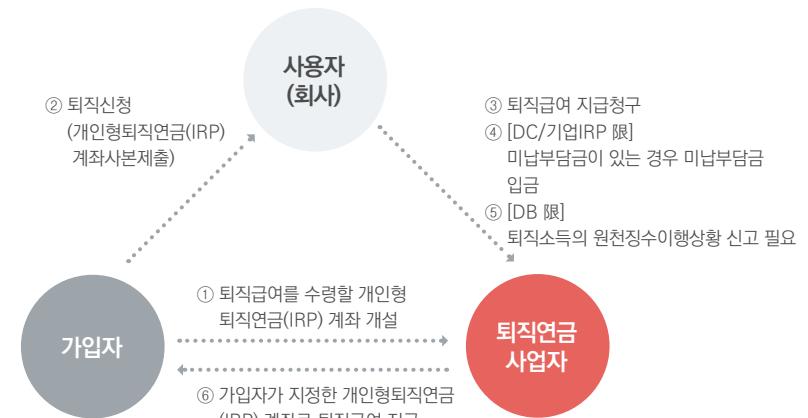


|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수령 시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 이전(2022.4.14 시행)

퇴직급여 지급절차



1.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개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 이전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합니다.

2. [퇴직의사 전달]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과 함께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청구]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당사 양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DB限),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DC/기업형IRP, 임원 퇴직의 경우限)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4. [DC/기업IRP限] 미납부담금 납입

가입자(퇴직예정자)의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못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불입된 사업주부담금+운용손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과세이연 신고 및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5. [DB限] 퇴직소득세신고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하므로, 사용자(회사)는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소득자 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흠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확정급여형(DB)	사용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이연(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신고)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6.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관련 세금을 차감후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당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가 당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 이전시 가입자가 원활 경우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매각 없이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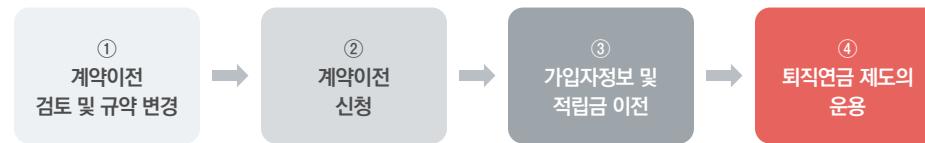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제도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
제도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DB/DC) 폐지신고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07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08 계약이전절차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계약 체결 후, 계약이전을 요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09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48①)에 따라 2023년1월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100만원 x 균속연수
6년 ~ 10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년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text{퇴직소득과세표준} \times 12 \div \text{근속연수}$$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09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예시]

입사일 2006.11.01 ~ 퇴사일 2023.10.30 (17년 근무) / 퇴직급여 200,000,000원

계산순서	해당금액	계산식
① 균속연수공제	① 3,250만원	① 1,500만원 + 250만원 × 7년
② 환산급여 - ③ 차등공제환산과세표준	② 118,235,294 - ③ 69,905,882 = ④ 48,329,412	{(퇴직급여 - ①) × 12/17년} - (6,170만원 + 8,205,882원)
⑤ 환산산출세액	5,989,411	④ × 과세표준별 세율
산출세액	8,484,998원	⑤ / 12 × 17년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조건의 미충족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시 가입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일시금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수령형태 소득의 원천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주1)} 이내)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주1)} 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주2)}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단,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분부터 60% 적용)	이연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연금소득세(종합과세) ^{주3)} • 70세 미만: 5.5% • 70세~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손익		

* 상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

| 09 과세체계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흐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연금소득세 적용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연금 수령}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 \times 1.2}{\text{한도}} \times 1.2$$

(11-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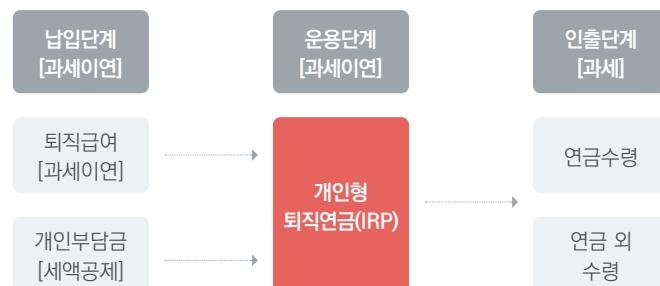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3) 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타사 연금수령액을 포함한 전체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023년1월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은 연령별 연금소득세(3.3%~5.5%) 원천징수 합니다.)

| 09 과세체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납입 · 운용시 세제혜택 〉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퇴직소득과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가입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 세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기업형IRP/개인형IRP: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전금융권 합산 납입한도이며, 한도 설정 후 가입자 부담금 납입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td> <td rowspan="2">900만원 (600만원)</td> <td>16.5%</td> </tr> <tr> <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td> <td>13.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 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재정검증

사용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주1)}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최소적립비율(2019~2021년: 90%, 2022년 이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재정검증”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사용자(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1) •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법정 최소적립비율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 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법정 최소적립비율

사업연도	2012.7.26~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1	2022~
법정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연차에 따라 위의 법정최소적립비율보다 작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재정검증

적립부족

재정검증결과 적립부족이면서 적립금을 최소적립금의 95% 이상 적립하지 못한 사용자(회사)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 2항 2호의 1 (2022.4.14시행)]

적립초과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결과	조치사항
기준책임준비금 × 150% < 보유적립금	사용자의 적립금 반환 요구시 반환가능
기준책임준비금 × 100% < 보유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50%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재정검증결과에 따른 DB형 퇴직연금 지급방식

- 사업연도 말 기준 적립비율(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법정 최소적립비율 (100%)
→ 퇴직연금 내에서 퇴직급여 **전액** 지급
 ※ 주의사항: 지급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등 전액지급시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전액 지급이 불가하며, 전체 퇴직금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로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 사업연도 말 기준 적립비율(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법정 최소적립비율 (100%)
→ 퇴직급여 × 지급 **적립비율**(적립금 ÷ 퇴직금추계액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내에서 **지급**, 나머지 퇴직급여는 사업장에서 별도 지급 필요



2024 RETIREMENT PENSION PLAN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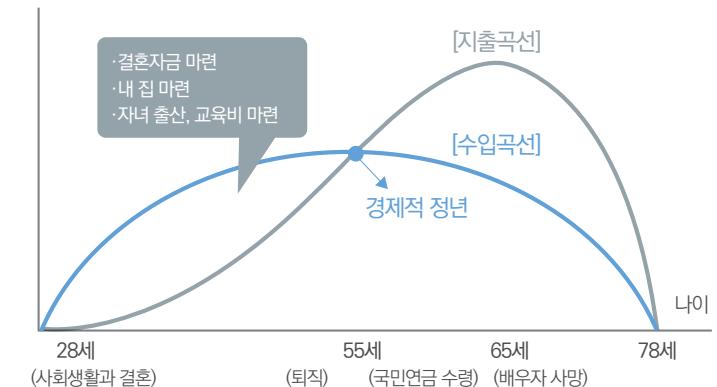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시]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 이슈	결혼/주택 마련 자금	교육투자 자금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상속 및 의료자금
자산관리 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자산관리 및 소비
안전자산 : 위험자산	30 : 70	30 : 70	50 : 50	65 : 35
대표적 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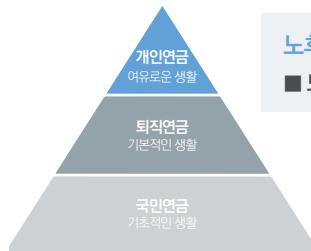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2010년 81세에서 2023년 91세로 이미 100세 시대에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은퇴기간 역시 20년에서 40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3 노후보장 체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산출방법

$$\blacksquare \text{ 노후자금} = \text{은퇴 직전 소득} \times \text{소득대체율}(60\sim80\%) \times \text{노후기간}(20\sim30\text{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04 노후보장 상세설계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투자의 기본원칙

■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의 수단은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분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의 분산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격변동이 다른 여러 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포함하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서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채권시장이 안 좋을 경우 주식시장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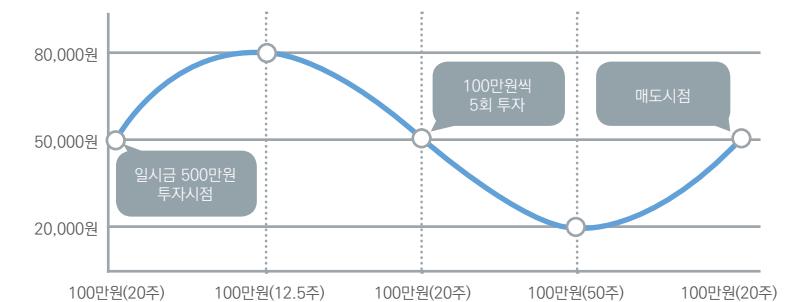
시기의 분산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입하여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낮은 가격에서 많이, 높은 가격에서 적게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거치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비해 적립식 매입방법의 평균매입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500만원 일시금 VS 정액분할 투자 비교



구분	투입금액	매입주수	환급금	수익률
일시금	500만원	100주	500만원	0.0%
적립식(정액분할)	100만원X50회	122.5주	613만원	22.6%

|105 투자의 기본원칙

■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타이밍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우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둘째,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셋째, 첫째와 둘째 운용방법을 제외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저위험 저수익	운용방법	상품종류	비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적금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자산 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분산요건을 갖춘 RP제외)에는 투자불가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환위험 해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 	
고위험 고수익	그 외 (위험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 투자적격등급의 회사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금지증권은 운용불가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운용방법 변경

만기도록, 투자성향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운용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운용방법 변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변경:** 기존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 **투자비율 변경:** 기존 보유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납입할 금액(부담금)에 대한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투자 가능한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107 NPS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는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sa.nps.or.kr>

노후생활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퇴직·개인연금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3종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종합진단

현재의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여 균형있는 노후준비를 지원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고객님께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향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적자금 설계

다양한 목적의 자금설계를 통해 자가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 RETIREMENT PENSION PLAN

3.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디플트옵션)란?

01. 디플트옵션 설정
02. 디플트 옵션(상품)지정 프로세스
03. 디플트 옵션 적용
04. 디플트 옵션(상품)적용 프로세스 상세

[디플트옵션 Q&A]



|01 디폴트 옵션 선정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 옵션)

■ 디폴트 옵션 선정

퇴직연금사업자 (당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법인), 가입자(고객)에게 퇴직연금 제반 서비스 제공 → 디폴트 옵션 승인 (고용노동부)후 상품제시 (사용자,가입자)
사용자 (DC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제도를 운용하는 법인 → 제시 받은 디폴트 옵션 중 선택, 근로자대표 동의후 규약에 반영
가입자 (DC/IRP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제도로 운용하는 고객 →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 옵션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상품을 최종적으로 선정 IRP제도로 운용하는 고객 → 퇴직연금 사업자에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당사로부터 제공받아 상품을 최종적으로 선정

1) 디폴트 옵션 승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품유형) 원리금보장상품, 펀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목 유형),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2) 디폴트 옵션 상품 제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디폴트 옵션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자산배분현황, 가입자 보호장치 등을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으로 안내

|02 디폴트 옵션(상품)지정 프로세스



|03 디폴트 옵션 적용

구분	가입자
통지시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후 4주이내
통지내용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지 시점 이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됨을 안내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정보 디폴트 옵션 운용 후에도 언제든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음

*디폴트 옵션 운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디풀트옵션)란?

|04 디풀트 옵션(상품)적용 프로세스 상세



주¹⁾ 디풀트 옵션 적용 대상 금액(의도적으로 운용지시 하지 않은 현금성 자금은 제외)가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상환 자금

주²⁾ 디풀트 옵션 적용통지시점(통지 후 2주 지난 시점에 디풀트 옵션 상품 적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상환된 적립금에 별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참고:Opt-In(옵트인) :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적립금을 디풀트 옵션으로 바로 운용할 수 있음

Opt-Out(옵트아웃) : 디풀트 옵션으로 운용 중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3.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디풀트옵션)란?

|디풀트 옵션(상품)현황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디풀트옵션을 꼭 해야하나요?

네. DC형, IRP 가입자는 디풀트옵션제도 상품 중 하나를 지정해야합니다. (DB형은 해당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디풀트옵션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디풀트옵션으로 지정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회사가 규약에서 정한 디풀트옵션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디풀트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디풀트옵션은 어떤 상품으로 구성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유형은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펀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
③ 포트폴리오 입니다.

3. 디풀트옵션은 언제 적용이 되나요?

디풀트옵션제도가 시행되면 원리금보장상품(예금, RP등)의 자동 재예치는 전면 금지 됩니다.

만기후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보유되며,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로 부터 2주내외 고객님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디풀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 됩니다. (사전 등록된 디풀트옵션이 없는 경우 상환된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보유 됨)

디풀트옵션으로 운용중에도 고객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디풀트옵션으로 운용지시 가능하며, 직접 운용지시를 통한 매수(옵트인)도 가능합니다.

4. 디풀트옵션으로 직접 매매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수] 보유중인 디풀트옵션 상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디풀트옵션 중 하나의 상품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정된 상품과 별개임)

직접 매수한 디풀트옵션과 디풀트옵션제도 자동매수에 의해 2개의 디풀트옵션 상품을 보유한 경우, 직접 매수 가능한 상품은 없습니다. 단, 1개의 디풀트옵션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상품으로 추가 매수 가능하므로 1개의 디풀트옵션을 매도 후 직접 매수 가능합니다.

[매도] 매수방법 (직접매수, 자동매수)에 관계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디풀트옵션 상품 중 여러 상품이 함께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은 보유 상품이 일정한 비율로 매도 됩니다. 포트폴리오형 상품의 경우 편입되어 있는 특정 상품만 지정하여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디폴트 옵션(상품)현황

5. 만기 도래 후 디폴트옵션 매수 된 경우 동일상품 연속 만기 도래분부터는 통지 및 대기 기간 없이 자동 매수 되는가요?

네. 두 번째 만기 도래된 경우 대기기간 없이 사전 지정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자동 매수(대기 기간동안 디폴트옵션상품 변경 가능)됩니다.

6. 사전에 디폴트옵션 지정 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만기상환금을 직접 매수지시 하려고 하는데 현금성자산 매도가능 금액이 없다고 할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전에 디폴트옵션 지정 된 경우이므로 만기상환금은 디폴트옵션 증거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 증거금 해지하면 현금성자산 매도 가능합니다.

7. 포트폴리오에 편입 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에도 자동 재 예치가 금지되나요?

포트폴리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예외적으로 자동 재 예치가 인정됩니다.

4. 폐업·도산기업의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라 사용자를 통한 퇴직급여 청구가 불가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 대상 가입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유안타증권 영업점에서 미청구 적립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 받아야하나 사업장 폐업·도산 등 기타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적립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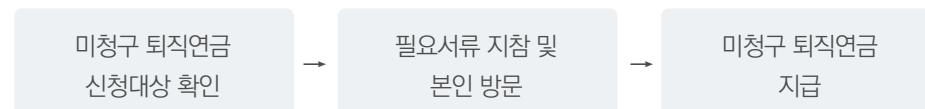
■ 신청대상

- 당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이면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가입자

■ 필요서류

- 가입자의 신분증, IRP통장사본
- 당해 사업자의 폐업·도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으로 인한 퇴직사실 판단서류 중 택1
 - ① 사회보험 자격상실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 ②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 ③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 등

■ 신청절차



■ 유의사항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기타 사유에 의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경우, 당사 적립금 수령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수령등 퇴직급여 지급시 예외적인 사항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령방법은 유안타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한 연금정보 확인방법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여 내 연금내역을 조회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접속 또는 QR코드 스캔



-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인증서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 연금조회 신청(3영업일 소요): 확인 가능시 알림메일 발송

- 연금조회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내연금조회'클릭

■ 통합연금포털 주요기능 소개

• 내 연금조회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 가능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종도인출 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 예시 연금액 조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노후재무설계

은퇴 시 연금자산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

MEMO

MEMO

MEMO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여의도동 앵커원)

고객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본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

